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선거관리위원 규정(이하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장 12조, 규칙 제5장 10조에 의거 평의원, 회장 및 감사, 부회장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평의원, 회장, 감사의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위원장1명, 위원 약 간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본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과 회장 및 감사의 선거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동수 득표자의 순위) 평의원, 회장단 및 감사의 선거에서 동수 득표시 연장 순위로 결정한다.

제5조 (직선평의원후보자 선정) 이사회는 평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선평의원 정족수의 2배수 이내의 평의원후보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직선평의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1.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의원후보명단(160명 이내)과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 투표 명단을 작성한다.
2. 회원은 투표명단에 명시된 후보 중 직선평의원 정수(80명) 이내의 후보에 기표한다. 단, 투표명단의 후보자 중 80명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
3. 투표 및 개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며 득표순위에 따라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4.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전자투표로 시행한다.

제7조 (당연직 및 간선평의원 선출) 다음에 의하여 당연직 및 간선 평의원을 선출한다.

1. 당연직평의원은 명예회장, 원로위원, 자문위원, (최고정책위원 제외) 재임중인 지회장은 투표 없이 평의원으로 추대한다.

2. 간선 평의원은 ① 지회 쿼터제 : 직선당선자가 지회쿼터 인원수에 부족할 경우 지회장을 제외한 인원수 만큼 추천한다(쿼터인원수 : 지회 회원수 30인당 1명).

② 신입 회장단에서 추천 :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요청되는 인사를 추천한다.

③ ①항 ②항에서 추천된 평의원은 직선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입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다음의 절차와 순위에 의해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1. 회장후보는 본 학회에서 3기 이상 임원을 역임한 직선평의원 및 당연직평의원으로서 선거권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아 회장입후보신청서(양식1, 2)를 별도의 선거관리지침에 따라 사무국으로 기한내에 등록한다.

2. 선거권자는 직선평의원 및 당연직평의원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 소견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거권자에게 E-mail 로 발송하여 사전 검토하게 한 후 소견발표 없이 출석투표(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4. 회장후보소견서에는 상대후보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며, 기타 유인물 및 E-mail 등을 발송할 수 없다.

5. 회장 및 감사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후보가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6. 선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는 선거 일주일 전부터 선거전날까지 학회 사무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7.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투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 투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5월 14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7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6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단, 2016년 1월 1일에 선임한 최고정책위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당연직 평의원 자격을 유지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선거관리 지침

1. 회장입후보신청서 제출 및 준수사항

- 1) 회장입후보신청서(양식 1)를 작성하고 선거관리규정 및 지침을 따를 것을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 양식 1(인적사항, 학력, 경력, 대리인 및 참관인 지정, 학회 운영철학 및 기본방안, 대표업적 3가지, 봉사활동, 수상 및 영예)
- 2) 회장입후보추천서 목록(양식 2)를 작성하고 회장입후보추천서(추천인 날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양식 2 (회장입후보추천서 목록, 회장입후보추천서)

부 칙

1. 이 지침은 2015년 7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